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3조)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7조의2)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정비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3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 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40조제5항에”를 “제40조제6항에”로 한다.

제97조 제목 중 “자격증명.”을 “자격증명·연습허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2에”로 한다.

별표 10 제목 중“(제9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을 “(제97조 및 제97조의2 관련)”으로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격증명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호 및 법 제47 조의2제1항제1호	자격증명등의 취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 벌금 200만원 이상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다) 벌금 100만원 미만	법 제43조제1항 제2호 및 법 제47 조의2제1항제2호	자격증명등의 취소 효력정지 50일 효력정지 30일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및 법 제47 조의2제1항제3호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자격증명등의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5) 법 제32조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년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7)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8)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2	자격증명등의 취소
9)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3	자격증명등의 취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10) 법 제40조제1항(법 제46조제4항 및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 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7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2) 법 제42조제2항(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의2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3) 법 제42조제4항(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8의3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4)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법 제43조제1항 제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한 경우		
15)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6)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 비행·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8)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9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등의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19)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및 법 제4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조의2제1항제10호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콜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등의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20)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5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1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21)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5호의2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1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22)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 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6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13호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3)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의무	법 제43조제1항 제1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4)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 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5)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26)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27)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1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28)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법 제43조제1항 제2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29)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3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30)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1)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2)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6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정지 150일
33)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7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34)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28호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등의 취소
35) 법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	법 제43조제1항 제2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우		
36)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7)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의2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8)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1호 및 법 제47조의2제1항제14호	자격증명등의 취소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2) 법 제40조제2항(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3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3호	효력정지 30일 이상
3) 제40조제5항(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4) 제41조(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	법 제43조제2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5호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5) 제42조제1항(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6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7)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 검사증명 취소
8)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2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9) 제76조제2항,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 제7호 및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별표 12 제8호나목2)가)(2) 중 “실기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을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년 이상의 관제 실무경력(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에서의 관제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중 “자격증명”을 “자격증명을”로, “기초전기, 인적성능 및 한계, 수학·물리·일반기계”를 “기초전기·전자, 인적수행능력, 수학·물리”로 하고, 같은 가) (4) 중 “교과목별”을 “교과목 및 교육내용별”로 하며, 같은 (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과목 및 교육내용	자격증명 등
------------	--------

1. <u>항공법규</u>	<u>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u>
2. <u>기초전기·전자</u>	항공정비사 또는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항공전자(전기, 계기 포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u>인적수행능력</u>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성능 및 한계과정을 이수한 사람
3. <u>수학·물리</u>	해당 과목에 대한 학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

별표 12 제9호나목2)가)(2) 중 “실기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를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4)가)(2) 중 “소지하고”를 “가지고,”로 하며, 같은 목 2)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에서의 정비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별지 제35호서식 중 ⑬구비서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구비 서류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1부 / 과목합격증 각 1부 <u>연습허가서 1부</u>
-----------	---

별지 제49호서식 제목 중 “항공종사자”를 “항공종사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 중 제2호의 개별기준 가목 자격증명등의 12) 및 13)과 나목 항공신체검사증명의 3)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전문교육기관의 학과 및 실기교관을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	제40조제6항에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97조(자격증명 · 연습허가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2에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 · 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②	----- ----- ----- -- 항공종사자 등 ----- ----- ----- -----	

작성·관리하고, 자격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지하고 항공신체 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